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094
결재일자	2016.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2016. 6.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중증장애인 인턴 근무자의 후원금 납부 서약서 작성과 관련된 민원발생과 장애인자립생활(IL) 지원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 보조금사업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집행계획 준수여부, 보조금 집행실태 및 종사자의 후원금 등을 점검하고자 함

I 조사 개요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장애인자립지원과-4429(2016.03.14.)호와 관련임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48개 센터(붙임)
- 조사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조사일시 : 2016.6.20.(월) ~ 6.28(화)
- 조사대상 기간 : 2015.7월 ~ 2016.5월
- 점검자 : 자치구 담당팀장, 담당, 시 담당팀장 및 담당
- 조사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II 점검 계획

점검방향

- 보조금 집행 등 회계분야 집행상황 확인
-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 적정유무 확인
- 후원금 수입과 지출 등 관리사항 확인

중점 점검사항

○ 사업분야

- 연초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및 실적 점검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
- 프로그램 적정 운영현황 등

○ 예산 및 회계분야

- 수입·세출 예산과목 편성 적정여부 및 기부금 등 기타 수입의 적정성
- 보조금·후원금·수익금 입·출금내역과 통장잔액 일치 유무 등
- 예산 계정별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등 작성 및 정리상태
- 법인전입금, 보조금 카드 사용 및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등

○ 인건비 등 기타분야

-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 적정 여부
- 종사자 후원금 납부 여부 및 관리 현황(종사자 1:1대면 조사)
- 물품구매 및 계약관리
- 후원금 예산편성,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금 예금이자 등 관리
- 재산 및 물품관리 등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위법행위 적발시 환수 조치
-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향후 사업계획 반영

Ⅲ

행정사항

- 자치구별 별도 점검계획 수립 : 2016.6.21.(화) 까지
- 중증장애인 인턴제만 운영하는 센터는 시에서 직접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7개소(용산행복, 피노키오, 함께가자, 문화날개, 동작, 우리,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점검결과 보고 : 2016.6.28.(화) 까지

- 붙 임
1. 점검대상 센터 현황 1부.
 2.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3. 점검표 1부.
 4. 점검결과 보고서 1부. 끝.